

제 650 호

1978. 4.19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

편집장 : 문화공보관 조 용 하

전화 7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6090

시 보

차 례

◎ 조 례

제 1233 호 : 서울특별시 공원조례상 개정조례..... 3

◎ 고 시

제 157 호 : 도시계획시설 (고속 철도) 지적승인..... 8

제 165 호 : 도시계획시설 (시장, 도로) 결정 및 변경결정
과 지적승인..... 8

제 166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..... 9

제 167 호 : 도시계획사업 (양묘포지조성) 실시계획인가..... 11

제 168 호 : 연주지구 경지정리 환지계획 (처분) 인가고시... 11

제 170 호 : 도시계획시설 (유원지, 운동장, 도로) 신설변경
결정 및 지적승인..... 12

제 171 호 :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실시계획인가..... 13

◎ 공 고

제 159 호 : 환지계획 일부변경공람공고..... 13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 (이면 계속)
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제 160 호 :	환지계획 일부변경공람공고.....	14
제 161 호 :	K.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.....	14
제 162 호 :	K.S 표시정지처분.....	14
제 133 호 (중구청 공고) :	공인신조공고.....	15
제 14 호 (동대문구청 공고) :	공인신조공고.....	16

조 예

국무총리와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
공원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
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

1978 년 4 월 19 일

○ 서울특별시조예제 1233 호

서울특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공원조례중 다음과 같
이 개정한다.

제 4 조 단서 및 제 7 조 단서를 각
각 삭제한다.

제 9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
때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민, 외국사절 또는 수행원
의 입장
2. 만 6세이하의 어린이의 입장
3.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공
원구역내에 조사 연구를 위한
입장
4. 봉무 또는 공원관리청과의
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입장
5. 국가 또는 공원관리청이 주
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
위한 입장
6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
인정할 때

별표 1의 2 및 별표 4를 삭제하
고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
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
5를 별표 4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별표 1

공 원 시 설 사 용 료

가. 일 반 공 원

종 별	구 분	금 액	비 고
운 동 장 사 용 료	매 2시간당	3,000원	
아동유영장사용료	1회에 대하여	50원	1회는 2시간이내로 함
상시영리행위 (사진)사용료	1인 1년에 대하여	60,000원	
공원입장료	대인 1회에 대하여	100원	낙성대포함.
	소인 1회에 대하여	60원	
식물원입장권		80원 이내	
영 화 촬 영	주간 1회에 대하여	40,000원	
	야간 1회에 대하여	80,000원	
공원월간입장료	61세이상 노인 1개월	750원	
남산공원차량	버스 1회에 대하여	600원	
	화물 1회에 대하여	600원	
	마이크로버스 "	400원	
	승용차 "	400원	
	소형화물 "	400원	
	2륜차 "	200원	

나. 어린이대공원				
종 별	구 분		금 액	비 고
입 장 료	개인	대인 1회에 대하여	300 원	소인은 만 4세 ~ 14세
		소인 1회에 대하여	100 원	이내로 함.
	단체	대인 1회에 대하여	200 원	
		소인 1회에 대하여	70 원	
어린이풀장	대인 1회에 대하여		400 원	1회는 당일로 함.
사 용 료	소인 1회에 대하여		200 원	
조 기 산 채	대인 1개월당		2,250 원	
	소인 1개월당		750 원	
야외음악당	주간 1회에 대하여		20,000 원	
사 용 료	야간 1회에 대하여		30,000 원	
영 화 촬 영	주간 1회에 대하여		40,000 원	
	야간 1회에 대하여		80,000 원	

별표 3

비공원관리청의 사용료

가. 일 반 공 원

종 별	구 분		금 액	비 고
유영장사용료	대인 1회에 대하여		500 원	1회는 당일로 함
	소인 1회에 대하여		300 원	
정구장사용료	평일 1시간에 대하여		600 원	
	토, 일, 공휴일에 대하여		1,000 원	

나. 어린이대공원				
구 분		대 인	소 인	비 고
하 놀 차	1 회	180 원 이내	90 원 이내	소인은 만 4 ~ 14 세 이내로 함.
청 용 열 차	"	"	"	
미 니 레 일	"	150 원 이내	80 원 이내	
번 개 차	"	"	"	
두 껴 비 차	"	"	"	
비 행 기	"	"	"	
밧 데 리 차	"	"	"	
아 폴 로 의 자	"	"	"	
풍 차 놀 이	"	100 원 이내	60 원 이내	
꼬 마 기 차	"	"	"	
맹 이 놀 이	"	"	"	
바 츠 카 포	"	"	"	
회 전 목 마	"	"	"	
회 전 킴	"	"	"	
회 전 그 네	"	"	"	
달 로 켓 트	"	"	"	
요 술 의 집	"	"	"	
아 기 차	"	"	"	

별표 2

공 원 장 용 료

종 별	구 분	금 액	비 고
공작물의 신축, 증축 광고물등의 설치 녹지미화조성	연액당 " "	인근토지임대료추정액의 100/100 " "	
임시토지점용 사용료	1 회에 대 하여	10,000원	1 일 오전, 오후 2 회로 함.
황물의 채굴		산지근처의 시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50/100	
죽림, 토석, 사력 채취		산지근처의 시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70/100	
토지의 개간		수확예상액의 25/100	
하천·호수의 수면이 나 수량의 증감할 초래하는 행위		인근 수량 토당 가격의 50/100	
식물 또는 곤충채집		시가의 100/100	
공원법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 관리 하는 경우		비 공원관리청이 시설 사 용자로부터 받은 장수금액 의 10/100	공원내 시설물 을 기부 채납 한 경우의 점 용료 및 무상 사용기간은 서 을특별시 재무 회계 규칙의 규정에 의함.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57 호

도시계획시설(고속철도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도시고속철도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41호(1977.3.16)

가. 고속철도 지적승인 조서

시설명	연장	기점	종점	비고
고속철도	7,233 m	삼섬동정차장	사당동정차장	고시구간중 정차장 제외
"	0.52 "	신림동정차장	신림동	

나. 고속철도 부대시설 지적승인 조서

부대시설명	위치	축	연장	면적	비고
잠실동	주공 2단지 앞	28m	170 m	4,760 m	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5 호

도시계획시설(시장, 도로) 결정 및 변경 결정과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 결정하고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와 동법제13조 및 건설부 고시 제41호(1977.3.16) 외거 이를 고시한다.

의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자하철본부 및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8.4.15

서울특별시 장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8.4.19

서울특별시 장

가. 도시계획 시설(시장) 결정 및 변경 결정				
구분	시장명	위 치	면 적 (㎡)	비 고
신 설	남 대 문 시 장	관악구 상도동 324-1(ㄴ)	2,220 (671 평)	
기 존	남 대 문 시 장	영구 남창동 32번지 일대	24,253 (7,336 평)	
변 경			21,322 (6,450 평)	도로제외

나. 도시계획 시설(도로) 결정 및 변경결정							
구분	등급	류별	폭·원	연 장	기 점	종 점	비 고
기정	소토	1	10m	225m	남창동 51-1	남창동 31-1	일부신설
변경	중토	2	15	225	"	"	
기정	소토	2	8	115	남창동 33-18	남창동 31-11	
변경	"	1	10	210	남창동 51-1	"	
기정	"	3	6	100	남창동 51-5	남창동 51-2	
변경	"	1	10	100	"	"	

(별첨 도면 생략).

◎서울특별시 고시제 166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43 호 (78.4.7) 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 및 폐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건설부 고시 제41호(77.3.16) 관한 위임 규정

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8.4.19.

서울특별시 시장

가. 도로 폐지 및 신설 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복원(㎡)	연장(㎞)	기 점	종 점	비고
폐지	소로	1	1	10	290	양재동 500-2 (대 1 - 23)	양재동 531	
"	"	"	15	"	120	양재동 526-2 다	양재동 537	
"	"	3	4	6	150	고속도로 부도	양재동 526 마	
"	"	"	12	"	290	"	양재동 산 1-1	
"	"	"	13	"	60	양재동 527-4 가	양재동 531 나	
"	"	4	14	4	130	양재동 531-3 다	양재동 531-14	
"	"	3	2	6	160	1010 구획 1 호 채 비 지	양재동 527 나	
신설	"	1	1	10	190	양재동 500-2 (대 1 - 23)	양재동 531-3 다	
"	"	2	2	8	160	1010 구획 1 호 채 비 지	양재동 527 나	
"	"	3	3	6	50	고속도로 부도	양재동 530 가	
"	"	3	4	6	50	"	양재동 499	
"	"	"	5	"	200	대 1 - 23	양재동 526 나	
"	"	3	6	6	140	양재동 527 가	양재동 531-3	
"	"	"	7	"	200	양재동 530 나	1026 구획 1 호 채 비 지	
"	"	"	8	"	120	양재동 527-2	"	
"	"	4	9	4	20	양재동 526 나	양재동 526 나	
"	"	"	10	"	40	양재동 527-2	양재동 526-2 다	
"	"	"	11	1	40	1026 구획 1 호 채 비 지	"	

별첨도면 생략

◎ 서울특별시고시 제 167 호

도시계획사업 (양묘포지 조성)
실시 계획 인가

1. 건설부 고시 제 146 (75.9.3)
호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
사업 (양묘포지) 에 대하여 다음과
같이 실시 계획을 인가 하였기 도
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
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77.3.
16)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.
2.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
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
이 고시로 갈음함.
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녹지국
녹지과 및 성동구청에 비치하고 토
지,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
에게 보인다.

1978.4.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 시행 위치 : 서울특별시 성
동구 군자동 205의 356 의 96 필지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
종류 - 녹지시설
명칭 - 양묘포지 조성
3. 사업규모 : 26,367.2평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
5. 착공 및 준공 예정일 :

78.4. ~ 78.12.31

6.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
소재지 : 별첨.
7.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
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
주소 설명 : 별첨 토지 조서
생략.

◎ 서울특별시고시 제 168 호

언주지구경지정리환지계획
(처분) 인가 고시

농촌근대화 촉진법 제 127 조 제
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언주지구
경지정리 환지 계획 (처분) 인가
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. 사업목적 : 농경지정리 환지
계획 (처분)
2. 시행자 : 강안정농지개발조합
3. 시행지구 : 강남구 도곡동, 대치동
지내 (구 도곡동, 대치동, 개포동
지내)
4. 사업면적 : 399,355 평
5. 총사업비 : 1,048,729 천원
6. 시행기간 : 76.9.24-77.12.30
7. 환지계획 (본 환지) 및 도면
설람장소 :
서울특별시 마장동 473 의 11
강안정 농지개발조합.

1978.4.20.

서울특별시장

◎서울특별시 고시 제 170 호

도시계획시설 (유원지, 운동장
도로) 신설 변경 결정 및
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유원지,
운동장, 도로)을 다음과 같이 신
설 및 변경 결정하였기 도시계획
법 제 12조, 동법제 13조와 건설부
고시 제 41 호 ('77.3.16) 규정에
가. 도시계획시설 (유원지) 결정 조서

외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
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
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
인에게 보인다.

1978.4.20.

서울특별시 장

구분	명 칭	위 치	면 적	비 고
신 설	광장, 유원지	성동구 광장동 122 일대	120,500㎡	

나. 도시계획 시설 (운동장) 결정 조서

구분	명 칭	위 치	면 적	비 고
신 설	광장, 운동장	성동구 광장동 318 일대	56,100㎡	

다. 도시계획 시설 (도로) 폐지 조서

구분	등급	류 별	번 호	육원	연 장	기 점	종 점	비 고
폐지	소로	3류		6	74 m	성동구 광장동 323-6	성동구 광장동 184	
"	"	"		6	65 "	성동구 광장동 148	성동구 광장동 184-6	
"	"	"		6	99 "	성동구 광장동 143-1	성동구 광장동 184	
"	"	"		6	64 "	성동구 광장동 95-1	성동구 광장동 128	

○서울특별시고시 제 171 호

도시계획시설 (학교) 실시계획
인 가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341 호 (77.9.26) 로 시설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362 호 (77.10.18) 로 지적 승인된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실시계획인가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 (77.3.16)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한다.
2.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8. 4. 22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영등포구 고척동

1-1 의 22 필지

나. 사업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실시계획인가

1) 서울계남국민학교 신설

다. 사업규모 및 면적 : 18,069

(5,466 평)

라. 사업시행자의 주소, 성명 :

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:

1) 착수예정일 : 사업실시계획인가

즉시

- 2) 준공예정일 : 착수일로부터 1 년
- 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이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 (별첨)

공 고

○서울특별시공고 제 159 호

환지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시흥, 역촌 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변경코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 및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공람에 공한다.
2. 환지계획변경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3. 서류 송달은 별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할 것이나,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 갈음한다.

1978. 4. .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명 : 시흥, 역촌추가토지구
획정리사업
2. 변경내역 : 영등포구 독산동,
서대문구 중산동 일부토지
3. 변경도서 : 생략 (서울특별시 도
시정비국 구획정리과 보관)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60 호

관지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신림토지구획정리사업
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한 관지계획
변경코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
제 55 조 및 행정권한위임 및 위
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의 규정
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간
공람에 공한다.
2. 관지계획변경 관계도서는 서울특
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
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
에게 보인다.
3. 서류 송달은 별도 토지소유자에
게 통보할 것이나, 미수령되는 토
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
고로 갈음한다.

1978. . .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명 : 신림토지구획정리사업
2. 변경내역 : 관악구신림동일부토지
3. 변경도서 : 생략 (서울특별시 도

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)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61 호

K.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

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및 동법
시행규칙운영요강 제 27 조 규정에 의
거 K.S (한국공업규격) 표시 정지처
분된 아래 업체에 대하여 동 처분
을 해제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
조 규정에 준하여 이를 공고한다.

1978. 4. 19

서울특별시장

- 가. 허가번호 : 제 282 호
- 나. 허가일자 : 1967. 7. 27
- 다. 제조업체명 : 동아건설 (주)
- 라. 대표자 : 이창익
- 마. 소재지 :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
동 2 가 27 번지
- 바. 규격번호 : KSB 1002
- 사. 품 명 : 6 각보울트 (미터나사)
- 아. 처분일자 : 1977. 11. 15
- 자. 해제일자 : 1978. 4. 19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62 호

K S 표시 정지처분

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및 동법
시행규칙 운영요강 제 27 조 및 동

제 29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
KS (한국공업규격) 표시정지 처분하
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

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.

1978. 4. 19

서울특별시장

위 가 번 호 제 204 호
위 가 일 자 66.7.7(76.1.23명의변경)
제조업체명 조선선재(주)
대 표 자 박무열
소 재 지 서울시영등포구당산동 4가 91
규 격 번 호 KSD 3554
삼 명 연강선재
규 격 3 중
처 분 기 간 본 처분일로부터 1개월이후
당시 해제조치가 있을 때까지
처 분 사 유 KS 규격미달

제 205 호

과 동

·

·

·

KSD 3552

철 선

아연도철선 1 중

본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후 당

시 해제조치가 있을 때까지

KS 규격미달

◎ 서울특별시중구공고제 133 호

공 인 신 조 공 고

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 조례 제 8 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관세 공인한
다음과 같이 신조하고 서울특별시 공인 제 9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공
고 한다.

1. 사 용 일 시 : 1978. 4. 1

2. 신조공인인명 : 별첨인명부 참조

1978. 4. 18

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

공인의 인영		◎ 동대문구청공고제 14 호 공인신조공고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대문 구청 공인불 78. 4. 14일부터 사용 승인하였기 동 조례 제 9 조에 의 기 이를 공고한다. 1978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공인외 인영	
인 영		공인명	중구재개발사업기금분임징수관 (도시정비과)
인 영		공인명	중구재개발사업기금분임징수관 (토목과)
인 영		공인명	중구재개발사업기금분임지출원
인 영		공인명	동대문구재개발사업기금분임징수관 (도시정비과)
인 영		공인명	동대문구재개발사업기금분임징수관 (토목과)

인 영		
부인영	동대 문구제 개발사업기금분임저출원	